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51140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636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511404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변론 종결 2018. 8. 28.

판결 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C는 원고에게 66,6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8369호로 2017. 3.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망인은 2016.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366,807,771원을 대출받아 2016. 11. 4. 그 중 366,8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아들인 원고, 딸인 피고들과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진료기록감정결과 (H),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망인은 2017. 3. 30.~ 3. 31.경 I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무기력 내지 혼미 상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갑 4, 진료기록감정결과(H),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2/11의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남편인 F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다. F은 2017.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 하여 주었는데, 이는 편의상 망인으로부터 F에게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인 증인 F의 증언은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설명(증인 G의 증언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이나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인 F은 망인이 부동산의 임대 및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또한 을 1(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F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동작구 J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9. 2.경 K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있다. 여기에 망인과 F의 약 50년에 걸친 장기간의 혼인생활 과정에서의 망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단독소유 또는 망인과 F의 실질적 공유관계, F의 망인에 대한 증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E에 대한 대출금 채무(366,807,771원)와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다.

○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366,8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690,909원($366,800,000\text{원} \times 2/11$, 원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66,800,000원 중 105,000,000원은 기존에 위 피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261,800,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평소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도 아니고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얻어서 이를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E 대출금 이자를 피고 C가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일 뿐, 망인으로부터 E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수 없다.

2) 판단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게 E 대출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C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66,800,000원 중 105,000,000원은 기존에 위 피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나머지 261,800,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피고 C가 E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갑 5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자를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고, 피고 C의 부담부분이 피고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C에게 지급된 자금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서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 C가 대출금 원금의 변제책임은 지지 아니하더라도 대출금 이자는 납부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당초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 B가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40,400,000원)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피고 C는 대출금 이자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수도 있다(증인 F의 증언은 비록 그 일관성은 부족하나, E 대출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담(즉 이 사건 아파트를 물려받은 딸들의 부담)이지 망인이나 F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회할 여지가 있다)].
- 원고가 E 대출금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만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8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앞서 판단한 바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E 대출금을 피고 C에게 교부한 사람은 망인이 아닌 F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3. 결론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611.8591㎡ 2층 755.7707㎡

3층 755.7707㎡ 4층 755.7707㎡

5층 755.7707㎡ 6층 755.7707㎡

7층 755.7707㎡ 8층 755.7707㎡

9층 755.7707㎡ 10층 755.7707㎡

11층 755.7707㎡ 12층 755.7707㎡

13층 755.7707㎡ 14층 755.7707㎡

15층 755.7707㎡ 16층 755.7707㎡

17층 755.7707㎡ 18층 437.79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795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7847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78478분의 49.0059

끝.